



##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일	1999. 2.26
개정일	2021. 8. 1
개정차수	10차
담당부서	평생교육원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원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부설 평생교육원 (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 제 2조 (설립목적) 본원은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한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 함양을 위해서 열린 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으로 교육을 갈망하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위치) 본원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본교 내에 둔다. (개정 2008. 3. 1, 2012. 7. 22)

### 제 2 장 조 직

- 제 4조 (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2.13, 2014. 5. 1)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 2.13)
- ③ 본원은 부원장과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 개정 2021. 8. 1)
- 제 5조 (교직원) 본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학사지원업무를 관장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 6조 (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9. 2.13)
- 제 7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8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9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4 장 설 치 과 정

제10조 (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1조 (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과정 등)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제15조 (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한다. (개정 2009. 2.13, 2009. 7.20)

제16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 이상 이수한자로 한다. 단, 정부지원 과정인 경우 8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5 장 학 습 자 활 동 및 포 상

제17조 (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8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9조 (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 제 6 장 회 계

제20조 (회계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의 2 (예산편성)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조신설 2014. 5. 1)

제21조 (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본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22조 (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 제 7 장 증 명 발 급

제23조 (제증명 발급) 본원의 수강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졸업증명서 <별지1>
2. 성적증명서 <별지2>
3. 재학증명서 <별지3>
4. 수료증 <별지4>
5.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별지5>
6. 수강확인서 <별지6>
7. 교육연수 이수증 <별지7>
8. 외래강사 경력증명서 <별지8>
9. 교육비 납입증명서 <별지9>
10. 학생증 <별지10>
11. 자격인증서 및 자격증<별지11,12> (신설 2011.11.20)
12.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제증명

## 제 8 장 보 칙

제24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 내규 등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원칙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

## 졸업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과

졸업일자 년 월 일

졸업증서번호 제 호

학위등록번호 동서울대-학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동 서울 대 학 교 총 장

# 성 적 증 명 서

학번(주민등록번호)	성	학	위	중	명
전	공	위	명	명	

<p>***** [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 *****</p> <p>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      이수년월</p> <p>교육훈련기관 :      동서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p> <p>***** [ 자격증 취득 ] *****</p> <p>구분      자격종류목및등급      학점      취득년월일</p> <p>발급기관명 :</p>		<table border="1">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인정학점</td> </tr> <tr> <td>전공필수</td> <td>전공선택</td> <td>교양</td> <td>일반선택</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인정학점총계</td> </tr> <tr> <td>평가인정학습과목</td> <td>평점평균</td> <td colspan="2">/ 100.0</td> </tr> <tr> <td>평가인정학습과목</td> <td>평점환산</td> <td colspan="2">/ 4.5</td> </tr> </table> <p>상기인의 학습과목별 성적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동서울대학교총장</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80%;"></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명장자</td> </tr> </table>	인정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인정학점총계				평가인정학습과목	평점평균	/ 100.0		평가인정학습과목	평점환산	/ 4.5			명장자
인정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인정학점총계																								
평가인정학습과목	평점평균	/ 100.0																						
평가인정학습과목	평점환산	/ 4.5																						
	명장자																							

【 별지 2 】

【별지 3】(개정 2008. 3. 1)

제 호

## 재 학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공 명  
학 년  
입 학 일 자  
재 학 기 간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학칙 제 23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공업 전문학사과정에 재학증임을 증명 함.

년 월 일

동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별지 4】(개정 2009. 2.13)

제 호

##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교 부설 평생교육원 ○○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년 월 일

동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별지 6】(개정 2008. 3. 1)

제 호

<b>수 강 학 인 서</b>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연번	학습과목명	학점	교육기간(개강일 ~ 종강일)	담당 교·강사명
상기와 같이 본교 학점은행제 과목을 수강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b>동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b>				

【별지 7】(개정 2009. 2.13)

## 교 육 연 수 이 수 증

이수번호 :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수과정명 :

이수시간 :

연수성적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정

기관(지정번호:        )

**동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별지 8】(개정 2008. 3. 1)


제 호

외 래 강 사 경 력 증 명 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경 력 사 항					
재 직 기 간		출강과정	담당과목	강의시수	비 고
부 터	까 지				
위 의 사 실 을 증 명 함.  년 월 일					계
					확 인
동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별지 10】(개정 2008. 3. 1)

**학 생 증**




과 정 명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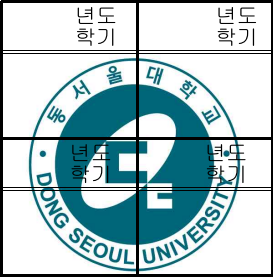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 \_\_\_\_\_

학 번 : \_\_\_\_\_

성 명 : \_\_\_\_\_

동서울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등록검인**

년도 학기	년도 학기
	

**유의 사항**

1. 본 증은 등교시 휴대하여야 함.
2.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음.
3. 사진 및 해당학기 등록 검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4. 분실하였을 경우 평생교육원 (☎031-720-2227,2267)으로 신고하여야 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12-0146호

#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커피전문가 (Barista)

위 사람은 동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커피전문가  
자격을 갖추었음으로 해당 자격을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successfully passed the test and  
acquired the qualification of Barista supervised by Dong Seoul University.

동서울대학교 총장



Dong Seoul University  
President

【별지 12】 휴대용 자격증 (신설 2011.11.20)

앞 면 (54mm × 86mm)

**0000(00)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번 호 : DSC-00-0000  
 발 급 년 월 :

0000 자격을 인정함

**동서울대학교 총장**

뒷 면 (54mm × 86mm)

<a href="http://www.dsc.ac.kr">www.dsc.ac.kr</a>		DONG SEOUL UNIVERSITY
년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 인
※ 유의사항 1.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 증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61-7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Tel:(031)720-2226-7		